



그룹사 내부간의 비용 지출에 관한 조세 판례

법무법인 "베벨라예프 그룹"은 러시아 자회사가 다국적 그룹의 모회사에 지불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법인세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조세적 위험성을 통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2014년 12월 4일자 사건 번호 A40-138879/14-75-404 사건에서 모스크바 상사법원은 러시아 세무당국이 러시아에 설립된 다국적 그룹의 자회사가 외국 모회사에 지급한 로열티를 법인세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세무당국의 새로운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판시했다.

러시아 유한회사 "Oriflame Cosmetics"(이하, 자회사)는 100%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된 글로벌 기업의 자회사로서 그동안 해외 모회사에 영업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및 노하우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해 왔다.

세무당국은 이에 대해 로열티 지급이 불가피한 영업 사실이나 로열티 금액에 관한 적정성에 대해서 묻지 않고 소급적으로 자회사의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러한 로열티 지급액을 비용에서 제외시키면서 법인세 등을 추가적으로 징수했다.

당해 세무당국은 러시아 자회사를 모회사와 구분된 별도의 법인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며, 자회사를 모회사를 대표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모회사를 사실상 동일체로 간주하였다.

세무당국이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된 근거로는 :

- 1) 자회사가 모회사 그룹 및 브랜드의 명성을 사용하면서 그룹과의 관계를 마케팅에서 강조한 점;
- 2) 모회사가 자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며 통제한 점;
- 3) 일부 근로자가 모회사 및 자회사에서 겸직하고 있으며, 일부 근로자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에 상호 이직을 해 왔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베벨라예프 그룹 한국팀(Korean Desk)의 Comment

글로벌 화장품 회사인 Oriflame Group의 사업 행태는 러시아에 진출한 여타 글로벌 기업들에도 유사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어떠한 외국 회사도 러시아 자회사를 러시아 민법에서 허용하는 자회사에 대한 관리권을 포기하며 방치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자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 영업은 일반적으로 모회사의 인지도와 명성을 기반으로 수행하고, 주요 직원이 모회사와 자회사에서 겸직하거나 상호 이직하는 것은 동기 부여나 관리 측면에서 유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 판례로 인하여 많은 글로벌 그룹이나 심지어 러시아 지주사들조차도 이러한 구조와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할 경우 세무당국과 빈번한 조세 분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러시아의 지주사 경영 시스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세 위험을 현저히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므로 모회사 간의 역할이나 영업 구조와 인적 관리 시스템에 대한 보다 면밀한 법적인 연구와 대책을 마련해 조세당국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Pepeliaev Group 소개 및 Contact details

법무법인 “베벨라예프 그룹”은 국제평가기관 CHAMBERS GLOBAL, CHAMBERS EUROPE, LEGAL 500, WTR, IFLR 등 으로부터 매년 러시아 최고 로펌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모스크바(본사), 상트-페테르부르크, 크라스노야르스크, 블라디보스톡(R&V 공동), 사할린(R&V 공동) 등 러시아 5개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약 200여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 최대 법무법인입니다. 동시에 대표변호사 직속으로 한국팀(Korean Desk)을 설치하여 한국기업들을 위해 각종 국제계약, 러시아 투자, 국제분쟁의 해결 등을 위한 최상의 러시아 법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팀(Korean Desk)은 한국기업의 러시아 진출과 현지 사업을 돕고자 한국기업이 관심 가져야 할 최신 러시아 법률과 판례 동향에 관한 국문 Legal alert를 발행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Legal alert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저희가 발행하는 Legal alert를 정기적으로 받아 보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정노중 한국팀장/파트너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details



정 노 중

한국팀장/파트너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모스크바시 변호사회 소속(2006-현)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2012-2014)
 모스크바 Bar Exam 외국인 최초 합격(2006)
 성균관대학교 법대 졸업(90학번)

T.: +7 495 967 0007(Ext.387)
 +82 10 6411 5737 (Seoul)
 E.: nc.cheong@pgplaw.ru